바라는 인간상



사랑으로 함께 성장하는 빛깔있는 학교

가정통신문

[홈페이: http://deukjin.es.kr]

제 2020-44호

교무실 : 252-0871교장실 : 254-4505

• F A X : 274-8386

출결상황 관리에 관한 안내

안녕하십니까?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는 이 때 가정에 두루 평안이 깃드시길 축원합니다. 드릴 말씀은 출결 상황 관리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.

■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

- 1.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2.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3.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"학교를 대표한 경기 및 경연대회 참가, 산업체 실습과정(현장실습), 훈련 참가, 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 등"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
구 분	출석 처리 방안		
교외 체험학습	○ 기간 :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○ 내용 : 현장체험학습, 친·인척 방문, 가족 동반 여행,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○ 절차 학부모 → 에게 신청 ⇒ 이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		

※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.(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인정되오니 3일 전에 꼭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)

4.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(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준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· 형제, 자매	1
입 양	• 본인	20
	• 부모 및 부모의 부모	5
LI DE	• 부모의 조부모·외조부모	2
사 망	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
	• 부모의 형제·자매	1

- ※ 뒷 장에 계속됩니다.
- ※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,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

있음.

- 5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, 사회 봉사, 특별교육 이수기간
- 6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
- 7.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"심각,경계" 단계인 경우에 한해 "가정체험학습"을 하는 경우(추가)

■ 다음의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

- 1. 질병으로 인한 결석
 - 가.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병명,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 류)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 - 나.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학부모의 견서, 처방전, 담임교사확인서 등)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
 - ※ 결석계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.

2. 미인정결석

- 가.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 출석 거부, 범법행위로 관련기 관 연행·도피 등)
- 나.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, 초·중등교육법시행 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1항 제 4호에 따른 출석정지와 제 6항의 가정학습 기간
- 다.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
- 라.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

3. 기타 결석

- 가. 부모·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나.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
- 다.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
2020년 5월 20일

전 주 덕 진 초 등 학 교 장